

실증시험·성능검증 지원신청서

※ 바탕색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60일
신청 기업	기업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소재지		
신청 개요	실증시험·성능검사 개요		
	지원 요청내용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을 위한 특별법」 제14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실증시험·성능검증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산업통상부장관

귀하

첨부서류	1. 철강기술의 개발 배경·연혁, 원리·성능 및 경제성 등을 적은 서류 2. 국내외의 사용실적(사용실적이 있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또는 국내외의 산업재산권 출원·보유 (해당 철강 관련 산업재산권을 출원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경우만 해당합니다)를 증명하는 서류 3. 해당 철강기술이 공급기업이 개발한 기술임을 증명하는 서류 4. 「특허법」 제58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전문기관이 실시한 선행기술 조사보고서 5. 실증시험·성능검증의 항목·횟수 및 방법, 이와 관련한 원료·재료 또는 시료의 종류, 국내 가동 시험성적서 등 신청인이 자체 평가한 내용을 적은 서류 6. 실증시험·성능검증을 받으려는 사항 및 현장평가 방법을 적은 서류(기술검증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7. 그 밖에 실증시험·성능검증을 위하여 산업통상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수수료 없음
------	--	---------------

처리절차

